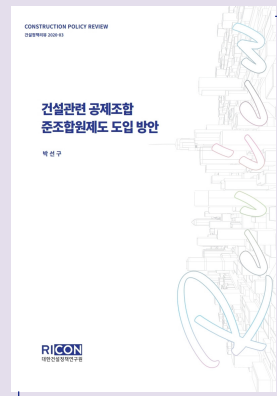


건설정책리뷰

건설관련 공제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방안

박선구_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보증 및 공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준조합원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준조합원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더불어 향후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필요한 준조합원 대상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건설관련 공제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건설정책리뷰를 발간하였다.

준조합원 대상을 '건설업 관련자'로 폭넓게 검토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건설업자와 계약, 출자, 고용 등의 관계가 있는 자와 보증서비스를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각 대상별 필요성과 도입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준조합원제도 운영의 출자부분, 권리 및 의무, 보증한도 등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는 법

률에서 정관 등에 위임할 가능성이 큰 사안들로 각 공제조합별 여건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합원제도의 도입방식은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방식을 각각 고려할 수 있으며, 각 방식별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목적과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산업의 침체와 건설보증시장의 불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이번 준조합원제도 도입은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준조합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대상과 그에 맞는 상품 등을 잘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